

# '24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

## I 사업 개요

### □ 목 적

-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

### □ 사업내용

-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(전년 11월~당년 10월)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

### 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·임업인·법인으로 친환경인증\*을 받은 자  
\* 단,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효해야 함

### □ 지원내용 및 예산

- 지원 내용·품목: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
- 지원 기준 : 국고 100%, 지자체보조(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)
  - 지급한도: 0.1~5.0ha/농가
  - 지급기한: 유기 5년(무농약 3 + 유기 2), 무농약 3년
  - 지급단가

| 구분 |    | 유기         | 무농약        | 유기지속     |
|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논  |    | 700천원/ha   | 500천원/ha   | 350천원/ha |
| 밭  | 과수 | 1,400천원/ha | 1,200천원/ha | 700천원/ha |
|    | 기타 | 1,300천원/ha | 1,100천원/ha | 650천원/ha |

- '24년 예산 : 22,832백만원(국비 22,832)

## □ 사업 신청

- 장소 :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신청
- 신청 기간 : 3~4월

## □ 대상자 선정

- (선정)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자로서 지원 자격·요건을 갖춘 자(5월)
- (확정)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(전년 11월~당년 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\*한 농업인(11월)

\* ①시·군·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,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,  
②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, 인증 변동사항 확인,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

## 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| 담당기관    | 담당과    | 담당자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림축산식품부 | 친환경농업과 | 사무관 박치형<br>주무관 정인화 | 044-201-2435<br>044-201-2434 |

### 1. 사업대상자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친환경농어업법”이라 한다)」 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·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

### 3. 지원대상

- 지원대상 농산물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“친환경농산물” 일체
- 지원대상 농지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'24년도 사업기간('23.11월~'24.10월)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
  -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

< 지급대상 제외 농지 >

-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(培地)나 재배용기·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·양액재배, 버섯재배,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(다만,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)
-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(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)을 굴취·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
-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,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,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
-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

#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

#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- 자금재원: 농업·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
- 지원형태: 지자체 보조(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), 국고 100%
- 지급단가(단위: 천원/h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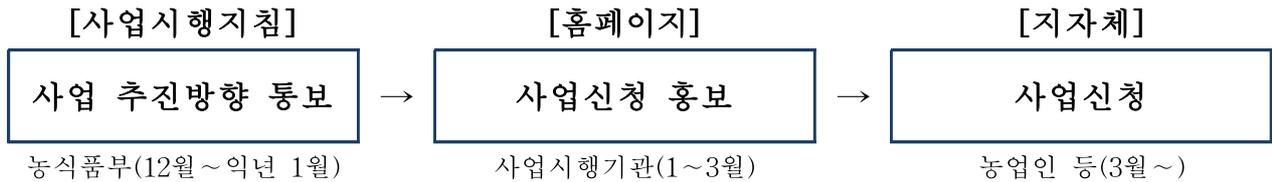
| 인증단계 | 논   | 밭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|     | 과수    | 채소·특작·기타 |
| 유기   | 700 | 1,400 | 1,300    |
| 무농약  | 500 | 1,200 | 1,100    |
| 유기지속 | 350 | 700   | 650      |

\*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.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

##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(경영체)당 지급한도 면적: 0.1~5.0ha
  -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.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
  - \* 예시)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(7ha), B(6ha), C(4ha)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, A, B, C는 각각 5ha, 5ha, 4ha에 대한 직접지불금 수령
- 지급 기간 및 방법: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~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 3~5회만 지급)
  - \* '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,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수령 가능
  -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, 인증단계(유기·무농약)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(3회) 지급,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(2회) 지급
  - \* 최초 인증필지(유기·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) 3년(3회) + 유기는 추가 2년(2회) 지급
  - 신청기간 이후(당해년도 사업기간 중)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(무농약 →유기 또는 유기→무농약)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
  - \* 이행점검 종료일(10.31)을 기준으로 함
  -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(5회)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%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

1. 사업 홍보 및 신청

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,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 및 농관원, 인증기관 등에 시달(12월~익년 1월)
- 시장, 군수,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(1월~3월)
  -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, 게시판 공고(시·군·구, 읍·면·동), 반상회보 게재 등
  - \*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, 인증기관, 인증종류,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, 사업신청 변경신고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신청기관(읍·면·동)에 제출하도록
  - \*\* 사업기간 중 인증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인증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사업기간 내 인증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공지

가. 사업신청

- (개인)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(필요시)를 갖추어 관할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  - \* 신청서류: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  -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)
- (생산자단체)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
  - \* 신청서류: ①, ②와 신청인 정보, 입금계좌, 인증종류, 품목, 농지 소재지, 재배면적이 포함된 신청 세부현황

나. 사업신청 기간: 3.1.~4.30.(전산입력 기간: 3.1. ~ 5.10.)

## 다. 사업신청 장소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
- 신청 농지가 동일 시·군·구 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  - \* 신청 농지가 시·군·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  - \*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(직불금 지급 시 신청 필지에 대한 인증이 유효해야 하므로 사업 기간 내 인증 갱신 필요)

## 2. 사업 선정 및 이행 단계

### 가. 사업대상자 선정

- 시장·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,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(5.10. 까지)
  - 신청 자격, 논·밭 구분, 인증단계별 지급단가, 농가당 지급면적 한도, 지급 횟수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 단가 조정
  - \* 읍·면·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, 인증필지·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

### 나. 사업 선정내용 변경

- 변경대상
  - (사업대상자)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, 농지의 매도·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
    - \* 인증기관에 인증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 승계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, 직접지불금은 사업기간 내에 승계를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
    - \*\* 인증사업을 승계받은 농업인은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만료일(10.31.)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함
  - (인증기관)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
  - (인증종류)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(유기·무농약)가 변경된 경우
  - (농지현황) 신청 농지의 주소(지번) 변경,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
    - \* 인증대상자,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,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지속되어야 함

- 변경신청 기간: 변경 및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
- 변경신청 방법: 해당 시·군·구청장(읍·면·동)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제출
  - 변경신청을 받은 시·군·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(1588-6830)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, 자료 입력(AgriX 운영기관은 시·군·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)

#### 다. 사업량 배정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(농림축산식품부 → 시·도, 5.20. 까지)

#### 라.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

-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(시·군·구 → 신청인, 5.31. 까지)
  - 시·군·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[별지 제2호 서식]
    - \* 단,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

#### 마. 이행점검 단계

- 시·군·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대상자가 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」 제11조와 제54조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
- 기관별 점검 사항
  - (인증기관)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
    - \* 인증정보(인증번호, 인증사업자,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
  - (시·군·구)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 한도(면적·횡수) 초과 여부, 중복신청 등
    - \*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,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
- 이행점검 요청(시·군·구 → 인증기관)
  - 시·군·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 전산검증 요청(5.21. 까지) / 신청정보 변경 시 수시 요청
    - \* 전산(AgriX) 운영기관(1588-6830)에서 수정 권한 부여 후 이행점검 기간 중 입력 가능

○ 이행점검 기간: 5.21.~10.3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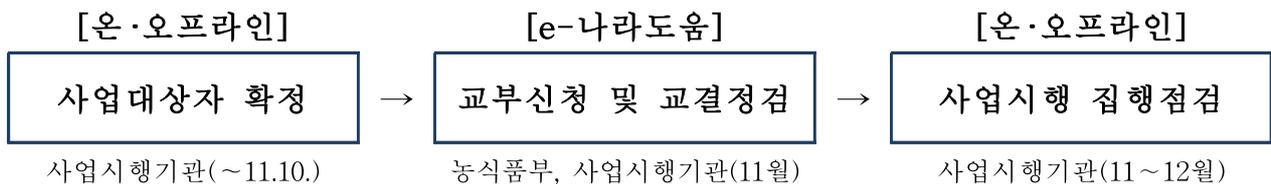
- (시·군·구) 인증기관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
- (인증기관)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 (실경작자 의심 등 중요 불일치 사항은 농관원과 협조하여 추진)

○ 이행점검 결과 통보(인증기관 → 시·군·구)

-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·군·구에 통보 (정기/수시, 10.31. 까지)
-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증번호, 인증종류, 인증면적과 신청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산(Agrix)으로 입력(통보)

## IV 사업 시행 및 관리

### 1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○ 농식품부는 시·도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부 결정 후 해당 시·도에 예산 교부

#### 가.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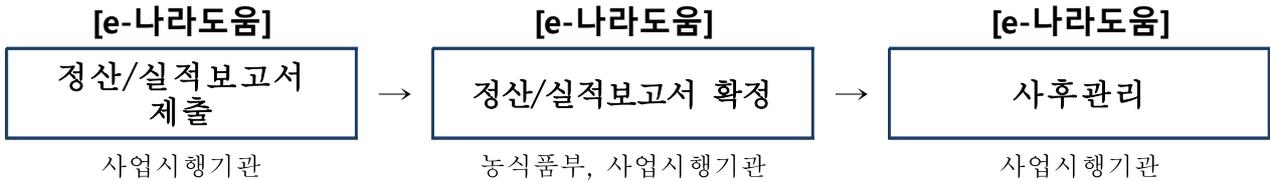
- 시·군·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전산시스템(Agrix)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
  - 인증 취소, 인증기간 종료, 신청 포기,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(필지) 제외
- 사업비(직불금)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(11.10. 까지)
  - 지급소요액 요청은 전산시스템(Agrix)을 마감한 금액\*을 반영

\* 전산시스템(Agrix) 통계/보고서 별지7호 서식(종류별 10원미만 절사) 활용

## 나.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

-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소요예산액 교부(11월)
- 각 시·도(시·군·구)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(11~12월)

## 2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

- 시도 및 시·군·구는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산/실적보고서를 등록
-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
-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자가 「친환경농어업법」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
  -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(전년 11.1.~10.31.) 인증취소, 인증종료,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 조치
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(10.31.) 후에도 당해연도 말(12.31.)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·군·구에 통보
-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,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선정을 제한
- 각 시·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직불금은 국고(공익기능증진 직불기금) 세입금으로 반납
  - \* 환수절차: 반납고지서 발급(시·군·구) → 농업인 등 반납 → 시·군·구 계좌 → 시·도 계좌 →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반납계좌(농협 301-0286-2705-71)로 반납



**주요 변경사항(해당사항 없음)**

[별표]

## 사업 추진 체계

< 세부계획 >

< 시기 >

< 주요내용 >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① 지침시달 및 홍보          | (전년 12월~2월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</li> <li>· 사업지침 설명, 공고·홍보(시·군·구, 읍·면·동)</li> </ul>  |
| ② 사업신청               | (3.1.~4.30.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(농지소재지 읍·면·동)</li> </ul>  |
|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    | (4.30.~5.10.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대상자 선정(시·군·구, 4.30.)</li> <li>· 선정결과 보고(시·도 → 농식품부, 5.10.)</li> </ul>  |
| ④ 사업량 배정통보           | (5.11.~5.20.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·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(농식품부, 5.20.)</li> <li>·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<br/>(시·군·구 → 신청인, 5.31. 까지)</li> </ul>   |
| ⑤ 이행점검               | (5.21.~10.31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자체에서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(시·군·구 담당자, 5.21. 까지)</li> <li>·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·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(읍면동 담당자)</li> <li>·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(인증기관 → 시·군·구, 10.31. 까지)</li> </ul> |
|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| (11.1.~11.10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(시·도 → 농식품부, 11.10. 까지)</li> </ul>   |
| ⑦ 직불금 지급             | (11.15.~12월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요예산액 교부(농식품부 → 시·도, 11월)</li> <li>· 보조금 지급(시·군·구 → 농업인, 11~12월)</li> </ul>  |

[별지 제1호 서식]

■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##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| 접수일자    | 처리기간       | 60일          |
| 신청인      | 성명(법인명) |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|
|          | 주소      |            | 전화(휴대전화)     |
| 입금<br>계좌 | 은행명     | 계좌번호       | 예금주          |

| 구분 | 인증<br>종류 | 품 목 |     | 농 지 소 재 지 |     |     |    | 재배<br>면적<br>(㎡) | 기본직접<br>지불금<br>대상여부<br>(O,X) | 과거<br>지급<br>현황<br>(횟수) |
|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| 대분류 | 소분류 | 시·군·구     | 읍·면 | 리·동 | 지번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논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밭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|          |
|----|----------|
| 확인 | 읍장·면장·동장 |
|    |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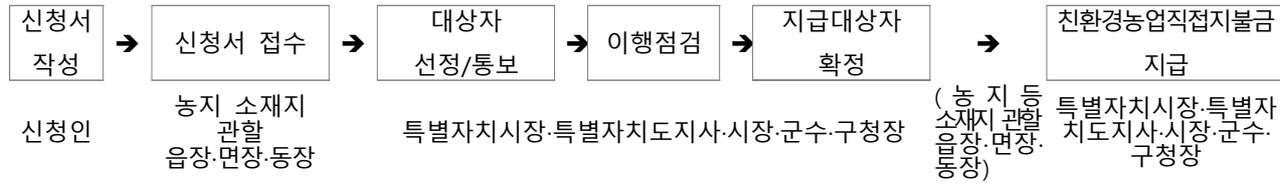
|           |  |          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     |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| 수수료<br>없음 |
| 제출 및 처리기관 | 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  |           |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작성 방법

1.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
2. "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"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3. "주소"란에는 주소를 시·도, 시·군·구, 읍(면)·리(동)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.
4. "계좌번호"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5. "인증종류"란에는 유기,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.
6. "품목"란에 대분류에는 곡류, 채소,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,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 품목명을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

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

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,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

1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, 농정안내 서비스, 지방 농정 지원, 농업·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, 전업농 등 육성·지원,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, 융자·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
[ ] 동의 [ ] 거부

2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·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공공기관,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·변경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,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  
[ ] 동의 [ ] 거부

3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, 등록(선정) 심사, 공개, 보조금의 부정·중복 지원 방지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·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
[ ] 동의 [ ] 거부

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), 농림축산식품부,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융자·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

[별지 제2호 서식]

■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

## 행정기관명

수신자  
(경유)

제 목 **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**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 1. 인적사항

|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|
| 성명<br>(법인명)   |  | 생년월일<br>(법인등록번호) |  |
| 농업경영체<br>등록번호 |  | 전화번호             |  |
| 주소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|

### 2. 지급대상 농지

| 구분                | 인증<br>종류 | 실제경작<br>품목 | 농지 소재지 |     |     |    | 지급대상<br>면적(m <sup>2</sup> ) | 기본직접지불금<br>대상여부<br>(O,X) | 예상<br>금액<br>(원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시·군·구  | 읍·면 | 리·동 | 지번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논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밭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예상액 합계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※ 1ha=10,000m<sup>2</sup>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 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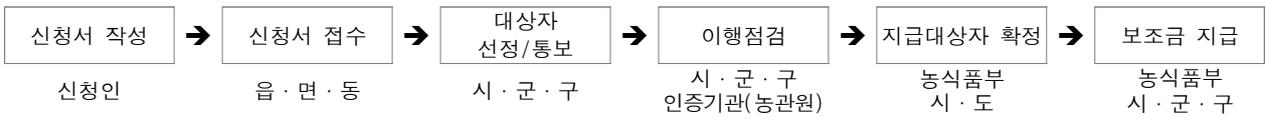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

작성 방법

- ① 신청인: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 신청인(법인 포함)의 인적사항을 기재
  - \*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
- ② 신청 변경사항
  - 사업대상자: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, 농지의 매도·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승계한 경우
  - 인증기관: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
  - 인증종류: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(유기·무농약)가 변경된 경우
  - 농지현황: 신청농지의 주소변경, 필지수,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
- ③ 입금계좌: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

처리 절차



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

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,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

1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·지원,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,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, 지방 농업정책 지원, 농업·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2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3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,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, 경관보전직접지불금, 논활용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, 보조금의 부정·중복 지원 방지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」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·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
※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(해지)되는 날까지 유효하며, 약정 종료 또는 해제(해지)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융자·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,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Ⅲ

## 주요 질문 및 답변 사례(Q&A)

## 1.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산출근거는?

-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배 품목별 평균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감안하여 지급단가를 산정하였음

## 2. '12년도에 무농약을 제외한 유기만 지급기간을 연장한 이유는?

- 무농약 인증의 경우 일반 관행농업과의 소득차를 해소하는 데 약 3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반면 유기인증은 최소 4~5년 소요됨.
  - 유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,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

## 3. '12년부터 유기직접지불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'10년까지 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?

-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임
- 그러나 '10년까지 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는 4~5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여 재배기술이 향상되어,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함

## 4. '15년부터 지속직접지불금을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유기 농가로 한정하는 이유는?

-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유기재배 실천 농가로 한정하였음

## 5.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?

-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5년 또는 5회(무농약 3회+유기 2회) 지급이 완료된 필지에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
- '10년까지 친환경직접지불금 3회 수령 한 필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면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함

## 6. 산양삼, 밤,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품목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?

- 임야 필지의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\*을 한 필지에서 임산물 재배하는 경우에 한 해 직불금을 지급함

\*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

## 7. 친환경인증 필지가 여러 시·군에 걸쳐있는 경우 어디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하는지?

- 신청 농지가 시·군·구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함
- 다만 신청 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 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 인증농지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
## 8.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이 5ha인 이유는?

-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등 수급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, 재정 여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대다수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·확산하도록 지급면적 상한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
  - 지급 상한이 없을 경우 밤,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우 직접지불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,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더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증면적을 늘려 부실 인증의 우려가 있음
- \* 경영주와 배우자(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)가 별도로 인증을 받고, 각각 직접지불금 신청하더라도 경영체당 5ha를 초과할 수 없음

## 9. 기본형직불제 등 타 직접지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?

-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형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경영이양직불금과는 중복지급 불가함

## 10. 농외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가?

-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음

**11. '24년 3월에 친환경인증을 처음 받은 자가 '24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한가?**

- 다음 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기간(전년 11.1.~10.31.) 동안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함

**13. 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불금 단가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?**

- 변경된 인증단계의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
  - 농업인은 읍·면·동 사무소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를 제출
    - \* (예시) 신청 당시 인증종류 무농약이었으나 당해 10월 유기인증으로 전환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 유기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
    - \*\* (자료입력) 직접지불제 신청 시 무농약으로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, 향후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유기인증 확인 후 Agrix시스템 수정·지급

**14.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대상자가 사업기간 중간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사업을 승계 또는 양도 한 경우 상속 또는 양수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이 가능한가?**

-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인증을 승계한 후 관할 읍·면·동에 사업 대상자 변경신고서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한 경우 직접지불금 지급

**15.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?**

- 사업 기간 중 인증 갱신이 이루어져 직불금 지급 시점에 신청한 필지에 대한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지급 가능(단, 사업기간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)

**16. 친환경직접지불금 지급 완료 후, 친환경인증이 취소, 종료 등 경우에 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하는가?**

- 사업 대상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(전년11~10월) 인증취소, 인증기간 종료,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

**17. 인증농가가 2,000m<sup>2</sup>(직불금 수령완료) 외 추가로 500m<sup>2</sup>를 인증받고, 직접지불금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가?**

- 지급할 수 없음.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한도 면적은 0.1ha~5ha로 지급면적은 최소 0.1ha 이상이어야 함

**18. '17년 무농약, '18년 유기, '19년 무농약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'22년 무농약 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한지?**

- 무농약직접지불금 신청할 수 없음.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므로 '22년도 무농약직불금 신청은 불가함. 다만, 유기에 한해 2회 추가 지급하므로 해당 농가가 유기 인증을 취득하고 유기직접지불금은 신청이 가능함

**19. 10.31일까지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?**

- 인증기관은 10.31일까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적합으로 회신하고 이후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시·군·구로 통보함
- 시·군·구에서는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등을 하여야 함